「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우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0호)

ㅇ 2026. 9.10.

ㅇ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8. 31. 김형우의원 외 6인(발의7, 찬성0)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8. 31.

다. 상 정 일 자 : 2026. 9. 10.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우 의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출산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무원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여 직원 복지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훈)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6. 9. 4.)과 관련하여 저출생 대응

및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출산격려금 지원의 실제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일률적으로 지원해 오던 관행을 개선해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조례안 검토

○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1]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집행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음.

○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3호는 저출생 대응 및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2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에서 “출산직원”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첫째 아이부터 지급할 수 있게 한 조치로 보임.

- 관련해서 우리구(의회 포함)는 2020년부터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아래와 같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타 구에서도 출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은 타 구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무 능률 향상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3조(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 1. 2.>
② 구청장은 임산부·신생아의 지원시책 안내 및 출산축하를 위하여 5만원 이내의 격려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
④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집행부 출산축하금 및 격려금 개요]

☐ 직원 출산축하금

○ 지급대상 : 전 직원(의회 포함)

○ 지급내용

- 첫째 아이 30만원 / 둘째 아이 50만원 / 셋째 아이 100만원 / 넷째 아이 500만원
- 출산선물(6만원 상당 과일바구니)

※ 부부공무원일 경우 1건으로 인정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출산축하금 지급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첫째 아이	25	26	32	29	30
둘째 아이	8	11	14	11	15
셋째 아이	1	1	-	-	-

☐ 정년·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격려금

○ 지급대상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수행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퇴직(예정)공무원 (의회 포함)

○ 지급내용 : 격려금 200만원 및 건강검진권(50만원 상당)

○ 격려금 지급 실적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선정자	44	36	36	35	31

○ 안 제7조제5호는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관행을 모범·우수 공무원 선발과 같은 공적심의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행부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2026. 9. 4. 일부개정 된 바,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형평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대응 및 출산·양육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출산격려금 지원의 실제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일률적으로 지원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 집행부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구의회 직원과의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